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잠정조치명령 위반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1129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안 제42조제1항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벌칙) ① (생략)	제4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신설>	제42조(과태료)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판정할 수 있고 조사결과 불

공정무역행위가 있던 것으로 판정되면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조사 신청·진행 중이더라도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를 통해 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다만,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에는 피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를 신청인이 미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정조치 명령 위반, 잠정조치 명령 위반시 각각 벌칙을 부과하는데 잠정조치 명령 위반시 형량은 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는 잠정조치는 시정조치 이전에 임시로 부과되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준을 낮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표 2] 시정조치 및 잠정조치 비교

구 분	시정조치	잠정조치
개요	조사 결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경우 무역위원회가 취하는 제재조치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조사 단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신청인의 담보제공 필요)을 받아 임시로 취하는 조치
조치 유형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 정정광고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3.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광고·홍보행위의 중지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 강제금	부과 가능	근거 규정 없음

그런데 2001년에 동법 제정 및 시정조치·잠정조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실제로 잠정조치를 취한 경우는 2004년 1건, 2006년 1건으로 총 2건이고, 이에 따른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벌칙이 부과된 경우는 없음.

정부는 전과자 양산 등을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2023.10.12.)을 수립하여 사문화된 벌칙규정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고 있음.

[표 3] 사문화된 벌칙규정 개선 과제

3. 사문화된 규정(10개 과제)			
30	교통안전법 §63·4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1~32	뉴스통신법 §35·1, §35·2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3	불공정무역조사법 §40②·1	수출, 수입, 판매, 제조, 반입, 광고 등을 중지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천만원
34~37	수산업협동조합법 §177·1, 12, 14, 16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별수협의 구역을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38~39	해수욕장법 §44·3, §45	(§44·3)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45)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	<형량조정> (§44·3) 1년, 1천만원 <선행정제재-후형벌> (§45)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자료: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즉, 잠정조치 위반시 벌칙 규정은 2001년에 동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전과자 양산 및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잠정조치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또는 조사종결 결정 등이 있을 때까지 따라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시정조치 위반에 비해 벌칙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은 해당 벌칙 규정이 2001년 시행된 이후 한번도 잠정조치 위반이 발생하지 않아 사문화되었다는 점과 함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제재 수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심사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및 판정결과 · 조치 현황

□ 최근 5년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지식재산권 침해	14	3	5	8	8	38
원산지표시 위반	-	-	-	-	-	0
허위·과장표시	-	-	-	-	-	0
수출입질서 저해	-	-	-	-	-	0
계	14	3	5	8	8	38

□ 조사판정결과 및 조치현황

연번	조사신청	품목	신청내용	종료일
	조사개시			(조치내용)
1	'19. 4. 4.	가방	상표권 침해	'19. 9.19. (시정, 과징금)
	'19. 5.15.			
2	'19. 5.13.	화장품	상표권 침해	(조사신청철회)
	-			
3	'19. 5.14.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19. 8.22. (시정조치)
	'19. 5.22.			
4	'19. 6. 7.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19.11.27. (시정, 과징금)
	'19. 6.19.			
5	'19. 6.26.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20. 4.16. (시정, 과징금)
	'19. 7.12.			
6	'19. 7. 2.	과자	상표권 침해	'20. 1.21. (시정, 과징금)
	'19. 7.29.			
7	'19. 7.12.	휴대용 선풍기	상표권 침해	'20. 1.21. (철회, 조사종결)
	'19. 8.13.			
8	'19. 7.11.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21.12.16 (무혐의)
	'19. 7.29.			
9	'19. 8. 8.	양말 편직기	특허권 침해	'20. 5.21. (시정, 과징금)
	'19. 8.28.			
10	'19. 9. 9.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20. 4.16. (시정, 과징금)
	'19.10.17.			
11	'19.10.23.	신발	상표권 침해	'20. 9.17. (시정, 과징금)
	'19.11.25.			

연번	조사신청	품목	신청내용	종료일 (조치내용)
	조사개시			
12	'19.12. 6.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21.12.16. (무혐의)
	'20. 2.10.			
13	'20. 1. 6.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20. 9.17. (시정, 과징금)
	'20. 2. 3.			
14	'20. 7.13.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21. 5.20. (무혐의)
	'20. 8. 3.			
15	'20. 7.22.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21. 4.15. (시정,과징금)
	'20. 8. 5.			
16	'21. 5.31.	의료용 필터	상표권 침해	'21.10.21. (조사종결)
	'21. 6.30.			
17	'21.6.3.(1,2), '21.8.4.(3)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22. 4.14. (시정, 과징금)
	'21.6.23(1,2), '21.8.9(3)			
18	'22. 3.18.	TV 수상기	특허권 침해	'23. 1.12. (무혐의)
	'22. 4. 4.			
19	'22. 4. 1.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22. 8.22. (조사종결)
	'22. 4.25.			
20	'22. 6.21.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23. 2.23. (시정,과징금)
	'22. 7.5.			
21	'22. 8.23.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 영업비밀 침해	'23. 7.13. (무혐의)
	'22. 9.14.			
22	'22. 9.13.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22.11.17. (철회, 조사종결)
	'22. 9.29.			
23	'22.10. 4.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23. 6.22. (무혐의)
	'22.11. 1.			
24	'22.10.31.	의류	상표권 침해	'23. 8.24. (시정,과징금)
	'22.12. 2.			
25	'22.11.24.	토너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23. 8.24. (조사중지)
	'22.12.19.			
26	'23. 4.12.	가방	디자인권 침해	'24. 1.11. (시정, 과징금)
	'23. 5. 3.			
27	'19.12.20.	폐렴구균단백 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24. 2.22. (시정,과징금)
	'20. 1. 3.			
28	'21. 7.15.	휴대폰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24. 2.22. (무혐의)
	'21. 8. 2.			
29	'21. 7.15.	휴대폰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영업비밀 침해	'24. 2.22. (무혐의)
	'21. 8. 2.			

연 번	조사신청	품 목	신 청 내 용	종료일 (조치내용)
	조사개시			
30	'19. 6.26.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24. 2.22. (시정, 과징금)
	'23. 9.21.			
31	'21. 7.15.	양극재	특허권 침해	'24. 3.21. (철회, 조사종결)
	'21. 8. 2.			
32	'23. 4.21.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24. 4.18. (무혐의)
	'23. 5.30.			
33	'23. 7.19.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24. 6.20. (무혐의)
	'23. 8. 9.			
34	'23.11. 1.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24. 6.20. (무혐의)
	'23.11.14.			